

교원전공심화지원규정

제정 2001. 3. 1

개정 2005. 6. 1

개정 2012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과정 혁신 일환으로 교육전공심화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대학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교원전공심화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절차) ① 교원전공심화지원의 신청자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강의 개선방안을 스쿨원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(삭 제)

③ 교원심화과정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매년 분기별로 교육을 신청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방식) ① 전공 심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는 대학이 전액 부담한다. 다만, 일정액 초과인 경우 대학과 수혜 교수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.

② 교육비지원의 지급기준은 신규 지원자를 우선하여 배정하고 복수 지원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전공심화의 교육비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⑤ 교육비 지원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기타) 전공심화 과정은 국내 교육에 한하며, 교육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